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1687 제출연월일: 2024. 7.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

행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혀

략)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연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제4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정 안

개

② -----

-----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 을 수 있다.

- <u>1. 국공립 연구기관</u>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
 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
 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
 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 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 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제23조(청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 --.
 - 제8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취소
 - 2. · 3. (생략)

② (현행과 같음)<삭 제>

제23소(정단)
1. <u>제8조제1항</u>
9·3 (혀해과 간으)